

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

「주차장법」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및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3차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건 명 :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3차독촉고지
2. 근 거 :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이*영 외 194명(별첨)
4. 공고기간 : 2017. 6. 12. ~ 6. 26.
5. 유의사항

-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(자동차 등)이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공고 및 게시장소 : 마포구청 홈페이지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
7. 문의사항 :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(☎ 02-300-5058)

따로붙임 :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

2017. 6. 12.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

